





✉ 2021 정기총회 식순

---

- 총회의장 : 배춘환 (손잡고 공동대표)
- 사회 : 박래균 (손잡고 운영위원)
  
- 진행순서
  1. 개회선언
  2. 성원 보고
  3. 의장 인사말
  4. 2020년 손잡고 활동 보고
  5. 안건 상정 및 승인
    - 제1호 의안 : 2020년 회계·업무 감사보고와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2021년 예산·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기타 의안
  6. 공지사항
  7. 폐회선언

- 목차 -

손잡고 6회 총회 식순	---	1
손잡고 활동보고		
1. 조직소개	---	4
2. 2020 활동목표	---	5
3. 조직활동보고	---	6
4. 2020 전체사업	---	8
5. 주요활동보고	---	10
6. 활동평가	---	33
7. 2020년 활동일지	---	40
2020년 손잡고 재정보고	---	51
총회 안건 상정 및 승인		
1. 2020년 회계 및 업무감사 보고와 승인의 건	---	56
2. 2021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의 건	---	58
3. 2021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의 건	---	63
4. 기타 안건	---	64
[첨부자료]	---	65
[첨부자료1.] 손잡고 정관(2019.4.25. 개정)		
[첨부자료2.]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안/21대국회 발의)		
[첨부자료3.] 괴롭힘소송금지 특례법(민사소송특례법/21대국회 발의)		



# 2020년 손잡고활동보고

---

---

## 1. 조직소개

1) 단체명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손잡고는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모임입니다. 2014년 2월 26일 시민사회 각계각층 550명의 제안자와 함께 출범했으며, 같은 해 4월 16일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습니다. 손잡고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업무방해죄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낼 수 있도록 문화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노동자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이유로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당사자들과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을 구성해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운영조직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진, 감사진은 2020년 3월 25일 개최한 제5회 손잡고 회원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손잡고의 회원은 CMS시스템 개편(2016. 7. 1) 이후 새로 후원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정기·일시(당해기준) 납부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상임대표

•배춘환 : 회원대표, 2014노란봉투캠페인 제안자

- 운영위원(6인)

•박래균: 인권재단사람 부설 인권중심사람 소장

•박병우: 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실장

•송영섭: 변호사, 전)금속법률원장

•신인수: 변호사, 민주노총법률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유금분: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심리상담실장

•윤지영: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이양구: 문화예술인, 연극인

- 감사

•업무감사 : 이태호(회원,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회계감사 : 박병학(회계사)

- 사무국 : 윤지선
- 회원 : 후원회원(일시후원포함) 247명

### 3) 활동위원회

손잡고는 활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활동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진상조사소위원회
- 손잡고기금심의위원회
- 손잡고법제도개선위원회
- 노동현장간담회참여단위 : 손배피해사업장 참여
  - 민주노총 지역본부 소속 : 동양시멘트지부, 부산합동양조 생탁, 울산과 학대학노조, 부천지역일반노조(원종복지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기아차비정규직지회, 보쉬전장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 쌍용자동차지부, 신영프레스전분회, 유성기업지회(아산, 영동), 일진다이아몬드지회, 파인텍지회, 하이디스 지회, 한국GM비정규직지회(창원, 부평), 한국게이츠지회,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지부, AVO카본코리아지회, KB오토텍지회, KEC 지회, DKC지회
  - 보건의료노조 소속 : 고려수(금천수)요양병원지부
  - 언론노조 소속 : MBC본부
  - 공공운수노조 소속 : 경북대학교병원분회, 서라벌지회, 택시지부, 철도노조, 한국항공비정규직지부, KTX 승무지부
  - 서비스연맹 소속 : 택배노동조합

## 2. 활동목표

### 1) 목표

- 손잡고는 파업 및 노동쟁의를 사유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해 임금, 퇴직금, 상여금, 집, 자동차, 통장이 모두 가압류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위기, 가족해체, 신용불량 및 파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이어지며 극단적 자살위기를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생계·의료비 지원을 합니다.

- 손잡고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 문제에 대한 법률적 해소를 목적으로 손배가압류 청구의 요건과 범위를 강화하는 법제개정 활동을 비롯해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을 알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 2) 2020년 주요과제

### “손잡고의 하루를 잡아주는 손”

- 입법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법 개정을 위한 활동
- 모금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모금운동
- 지원활동 : 손배가압류 피해자 및 노동현장 지원활동
- 의제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의제화(기고, 교육, 토론회, 공청회 등)
- 감시활동 : 손배가압류 현황조사 및 사례 기록
- 캠페인활동 :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대한 여론형성(공연, 전시, 1인시위 등)
- 회원활동 : 회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 회원배가운동
- 사무처 근무환경 개선 및 사무국 구성 확대

## 3. 조직 활동보고

### 1) 운영위원회 활동

- ① 주요활동 내용 : 2020년 운영위는 조직정비, 사업 기획 및 승인, 활동위원회 구성, 손배가압류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 손잡고 자체모금활동 기획 및 승인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 ② 2020년도 정기 운영위원회의 : 10차례 진행

- . 2020.01.13. 제38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 2020.03.03. 제39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 2020.04.20. 제40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 2020.05.19. 제41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 2020.06.23. 제42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 2020.07.27. 제43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 2020.09.10. 제44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 2020.10.07. 제45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 2020.11.30. 제46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 2020.12.22. 제47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③ 각 운영위원 담당활동 구분 : 운영구조와 재원확보방안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사무국 구성을 1인 활동가 체제로 둘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손잡고의 운영에 있어 계획된 활동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사무국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각 운영위원은 활동 계획에 따라 분야별 담당을 맡아 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운영위원은 사업 시행 과정을 정기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공유합니다.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무국 담당 : 배춘환 대표, 박병우 운영위원
- 모금·캠페인, 국회사업 담당 : 박래군, 안진걸, 이양구 운영위원
- 노동현장 담당 : 이남신, 유금분, 윤지영 운영위원
- 법제도개선활동 담당 : 송영섭, 신인수, 윤지영 운영위원
- 회원 담당 : 박래군, 안진걸 운영위원

## 2) 사무국 구성 및 활동

- ① 사무공간 : 2017년 4월부터 <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의 공간지원을 받아 1층에 사무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 ② 활동가 : 정규직 채용은 재정적 사유로 증원없이 1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사무국 요청에 따라 운영위원과 상의하여 단기로 활동보조인력을 채용합니다. 손잡고 단기인건비 시급은 ‘최저시급1만원’을 실천합니다.
- ③ 주요 활동 : 손잡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활동에 따른 사업실무 진행을 말합니다. 이외 회원사업 및 회계 관리 등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합니다. 2020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공익단체) 선정에 따른 행정기관 업무보고 등을 진행합니다. 사무국의 활동은 사무국 담당 운영위원과 논의해 결정하며, 매월 진행하는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보고합니다.

#### 4. 2020년 전체사업

표-2020 손잡고 활동정리표

항목구분	사업내용		시기	비고
모금활동	CMS-회원배가활동		수시	회원 247명
	긴급법률기금모금		19.12~20.3	원종복지관 피해구제
	지정기탁		수시	학술연구상금 기탁
사업비 공모신청	인권재단사람 인권프로젝트:온		19.1.25~27	2020년 소송기록 자료집 발간사업
	공공상생연대기금 사업비 공모		20.8.7~9.11	비영리부문 1억원 선정 손배아카이브 사업
법제도개 선사업	국가손배 대응모임 (간사단체 참여)	기자회견, 성명	수시	당사자 간담회 4회 / 기자회견 3회 / 성명 및 보도자료 3회
		실무회의	수시	4회
		책임기관면담	수시	국회 2회
	법제도개선활 동	법제도개선위	수시	회의 4차 / 21대국회 법안마련
		법률의견서	요청시	대법원 계류사건 3건 전문가 의견서 대법원에 제출
		손잡고논평	수시	4건
		총선대응	20.3-4	각 정당 질의서 전달 및 응답결과 발표
		손배현황발표	20.11.11	청와대 요구안 전달
		사례증언대회	20.11.11	손배가압류, 노동자 이야기
		변호사집담회	20.11.17	노동자의 변호인, 손배가압류를 말하다
	노동현장간담회		월1회	제43차~제50차(8회차) 진행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20.4~9	연례사업 각 로스쿨 14개팀 참여
	감시활동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필요 시
토론회		20.11.23	손배소송의 문제점과 법제도개선의 필요성	

	자료집발간	20.11.30	2020 노동권과 손배가압류 : 소송기록 분석 자료집	
지원활동	성심수녀원 지원연계 (장학금, 보육비)	수시	고등학생 5명, 영유아 5명	
	긴급법률기금지원	20.04	<두여자이야기> 손배피해노동현장 당사자 법률기금 지원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요청 시	손잡고노동현장 실무연대	
	연대사업	공동 기자회견, 성명	요청 시	손배관련 외 노동현장, 시민단체 등 연대
		대책위 참여 등		
		노동현장 일정참여		
기타연대활동	필요 시	경조사, 후원행사, 현장재정사업연대 등		
의제활동	손배가압류 관련 기고	수시	11건	
	손배관련 언론기획	수시	손배 기획기사 추진	
회원활동	제5회 회원총회	2020.3.25	연례사업	
	뉴스레터 <손깍지>, <손잡고편지>	정기	정기 뉴스레터 3회 발행 <손잡고편지> 3회 발송	
기타	운영회의	정기	38차~47차(10회차) 진행	
	홍보영상제작	필요시	4회(손잡고 유튜브 업로드)	

## 5. 주요활동 보고

### ■ 모금활동

#### 회원 후원 | 2020년, 손잡고를 후원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0년에도 손잡고와 손을 잡아주신 회원여러분 덕분에 많은 손배가압류에 맞서 노동권을 지킨 노동현장의 손을 잡고 법제도개선활동, 현장지원활동 등 손잡고의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2020년 258명의 회원여러분 가운데 29명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활동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다른 한편, 14명의 회원님이 새로 손을 잡아주신 덕에 현재 247명의 손잡고 회원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더 많은 시민들이 손잡고를 알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회원배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도 회원배가에 동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회원가입

- 손잡고 홈페이지 '후원하기': <http://sonjabgo.org/>

#### 2020년 손잡고와 손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1월~2020년 12월 31일)

강버들	강세웅	강인수	강정숙	강태웅	고태은	곽동표	곽승규	곽희창	구교인
구두희	권경희	권두섭	권미영	권일	권주용	권태훈	길래현	김강학	김경동
김경래	김경훈	김규성	김금주	김남오	김대용	김동수	김동원	김동필	김득중
김명옥	김미숙	김미영	김상구	김상용	김상은	김선종	김성민	김성원	김성진
김세진	김수경	김수희	김숙연	김아리	김언경	김연우	김영민	김영숙	김영재
김옥경	김우	김윤수	김은아	김은주	김은희	김이종	김정욱	김정운	김종원
김지숙	김진이	김창선	김채빈	김혜인	김호규	김호정	노미선	노영숙	노현아
류성훈	문근숙	문기주	문종찬	민현수	박경은	박다정	박래균	박민	박배균
박병우	박상근	박석운	박선유	박성호	박소희	박순철	박재필	박정희	박주영
박채은	박철민	박태규	박태현	박혜진	박희영	박희정	배은정	배지훈	배춘환
백선영	백영화	변영학	서민식	서중석	서진숙	서찬욱	서한나	석권호	선혜란
성지민	송경숙	송규영	신세민	신정웅	신희영	심춘복	심희준	안성희	안순호
안영철	안진걸	양은정	엄기정	오소영	오춘상	옥지인	원동석	유금분	유민지
유애리	유연석	유현웅	윤여철	윤지선	윤지영	윤충열	윤형중	은수미	이갑호
이건민	이경숙	이기찬	이남신	이달별	이대희	이덕희	이동철	이미옥	이민영

이상명	이상민	이서영	이선아	이선주	이설희	이성곤	이성하	이수호	이승근
이승한	이승훈	이애자	이양구	이용석	이우경	이윤주	이은주	이인용	이재익
이재형	이정연	이정현	이조은	이종희	이지연	이진아	이창근	이충호	이태호
이현욱	이현진	이효건	임미선	임소라	장동엽	장석우	장인숙	장지선	전경혜
전미영	전의창	정애리	정준효	정홍조	정환봉	조경애	조기선	조동희	조미선
조민혁	조선이	조선희	조승희	조은	조은하	조혜선	주윤아	지민선	진기숙
차진각	차형근	채희국	최노훈	최명희	최보민	최상하	최수미	최승현	최여울
최영호	최용규	최용근	최은비	최전돈	최정운	최창수	탁선호	편도환	하나
하태승	하해성	한상균	한상훈	한재홍	함점순	허경훈	허종석	허지웅	헌승건
현상용	홍기빈	홍상희	홍성일	홍예원	황은숙	황정인	(247명)		

**단체**  
성심수녀회 민주노총법률원 법무법인여는 민생경제연구소 (4개 단체)

**단체 후원 | '단체'도 함께 손잡고와 손잡기**

2020년에도 회원여러분과 더불어 여러 단체에서 손잡고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노동기본권을 위태롭게 하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손잡고의 활동 취지에 공감해주신 성심수녀회, 민주노총법률원, 그리고 안진걸 운영위원님이 함께하는 민생경제연구소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모사업참여 | 비영리재단과 손잡기**

지난 총회에서 2020년에는 사업비 확충을 위해 비영리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회원여러분께 약속드린 바 있는데요. 2020년, 공모사업 신청이 결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먼저 '인권재단사람'에서 진행하는 '인권프로젝트 : 온'에 선정되어 『2020 노동권과 손배가압류-소송기록 분석 자료집』을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고배를 마신 바 있는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사업비 공모전에도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는데요, 2020년에는 반갑게도 화답을 해주었습니다. 무려 '비영리 부문 1억원' 공모에 손잡고가 야심차게 준비한 '손배가압류 알리미 아카이브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든든하게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 긴급법률기금모금 | 그녀들의 용기, 우리의 응답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 해” 이 한 마디에 저항한 이유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무더기 보복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두 노동자에게 연대하고자 시작한 긴급법률기금모금 <두 여자 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선 용기가 무더기 보복소송에 무너지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 공감한 많은 분들의 참여로 두 노동자에게 긴급법률기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금모금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인권중심사람, 인권운동공간 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함께 했습니다.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3월 6일까지 소셜펀치, SNS 홍보,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두 노동자의 사연을 알리는 등 모금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총 7,304,028원을 모금해, 긴급법률기금 대상으로 소송비용 및 손해 판결금액 등으로 지급했습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긴급법률기금모금 웹자보

### <두 여자 이야기> 후원자 명단

1) 소셜펀치 명단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휴대폰 결제 중 통장입금확인 기준)

강덕화 강슬기 강은진 강찬 강현진 길래현 김경락 김동수 김민정 김보금 김서윤 김선환 김연희 김영재 김우 김은선 김정은 김태원 김현정 남정미 류민 류후남 문홍석 및 박동휘 박래군 박미옥 박병우 박정준 박희영 방효훈 배나은 변수지 송근이 안영철 안태진 연지선 오여주 오창희 옥나래 올라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희 윤지선 윤지영 윤충열 이상희 이서영 이선아 이수호 이용석 이정미 이지영 이지현 이지혜 이해경 이해리

이흥우 임소희 임용현 작은하늘 장미 장일호 전경민 전찬영 정경태 정다운 조계성 조길래 조창성 지연호 진윤경 진재연 최동운 최수미 최은비 최정은 최정화 최지원 한상균 한용현 한지선 허석영 현기욱 황세욱 황인희 황재호 (87건)

2) 후원계좌 직접입금 명단

for990 ISHIKAWA J KEC지회 가임기오승은 건설산업연맹 공군자 권경욱 권오광김급법률 금속노조쌍용차 김대현 김명주 김민주 김수억 김승화 김일규 김정옥 김지선 김현숙 꼭승리하실거라 남유선 노성철 노애경 마고/이은주응 무매입금차경윤 문우정 민주경기소송연 민주노총부천시 민주연합틀게이트 박수아 박신서 박효진 방승범 배춘환 백선영 백현종 부천새시대여성 송다영 송단 신현자 안경선 안주영 유성영동지회 유승준 윤경희 윤덕진 윤종욱 윤충열 응원합니다 의료연대기금후 이강수 이남신 이동현 이비함 이성종 이수호 이승주 이연재 이우경 이은영법률기금 이은주 이은주 이정선 이정아 이정아함께 이정언 이종명 이창근 이현경(소송비) 이현영 이희원 전교조부천중동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조 전국사무금융서 정보라 정세정 정소희 정찬용(광주) 정홍조 조은선 주형민 직장갑질119 진상경 차성욱 최상철 최영진 최용선 한국메디칼샤푸 한석호 한희섭 허지영 홍기빈 홍기빈 홍예원 황동훈 (96건)

3) 전체명단 (소셜펀치와 후원계좌바로이체 명단 합)

for990 ISHIKAWA J KEC지회 가임기오승은 강덕화 강슬기 강은진 강찬 강현진 건설산업연맹 공군자 권경욱 권오광김급법률 금속노조쌍용차 길래현 김경락 김대현 김동수 김명주 김민정 김민주 김보금 김서윤 김선환 김수억 김승화 김연희 김영재 김우 김은선 김일규 김정옥 김정은 김지선 김태원 김현숙 김현정 꼭승리하실거라 남유선 남정미 노성철 노애경 류민 류후남 마고/이은주응 무매입금차경윤 문우정 문홍석 민주경기소송연 민주노총부천시 민주연합틀게이트 및 박동휘 박래군 박미옥 박병우 박수아 박신서 박정준 박효진 박희영 방승범 방효훈 배나은 배춘환 백선영 백현종 변수지 부천새시대여성 송근이 송다영 송단 신현자 안경선 안영철 안주영 안태진 연지선 오여주 오창희 옥나래 올라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성영동지회 유승준 유희 윤경희 윤덕진 윤종욱 윤지선 윤지영 윤충열 윤충열 응원합니다 의료연대기금후 이강수 이남신 이동현 이비함 이상희 이서영 이선아 이성종 이수호 이수호 이승주 이연재 이용석 이우경 이은영법률기금 이은주 이은주 이정미 이정선 이정아 이정아함께 이정언 이종명 이지영 이지현 이지혜 이창근 이해경 이현경(소송비) 이현영 이해리 이흥우 이희원 임소희 임용현 작은하늘 장미 장일호 전경민 전교조부천중동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조 전국사무금융서 전찬영 정경태 정다운 정보라 정세정 정소희 정찬용(광주) 정홍조 조계성 조길래 조은선 조창성 주형민 지연호 직장갑질119 진상경 진윤경 진재연 차성욱 최동운 최상철 최수미 최영진 최용선 최은비 최정은 최정화 최지원 한국메디칼샤푸 한상균 한석호 한용현 한지선 한희섭 허석영 허지영 현기욱 홍기빈 홍기빈 홍예원 황동훈 황세욱 황인희 황재호 (183건)

## ■ 법제도개선 활동

### 법제도개선위원회 | 21대 국회 다수가 필요성에 공감한 '노란봉투법'!

2020년, 송영섭, 윤지영 두 분 운영위원에 더해 신인수 변호사의 운영위원 합류로, 더욱 탄탄해진 법제도개선위원회! 손잡고 주력 법안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괴롭힘소송금지법'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지를 모았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20대와 달리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더 개선된 법안을 준비했습니다.(부록 참조). 2020년 11월,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1년 3월 4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대표발의).



**Q** 20대 국회에서 노동3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위 내용의 법률안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A** @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정의당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안이다

#### ▲ 총선 질의 기자회견(2020.03.25.)

더욱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각 정당에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에 대해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요, 21대 국회 원내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노란봉투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의사를 밝힌만큼 21대 국회에서는 꼭 폐기가 아닌 논의와 입법이 되길 바랍니다.

**손배현황발표 | 58건, 658억원, 여전히 노동권 침해하는 손배가압류!**

2020년 11월, 전태일열사 50주기가 있는 달, 손잡고는 11월은 ‘손배가압류 알림의 달’로 선포하고 노동현장과 함께 정부, 사법부, 국회에 손배가압류 문제를 방조한 책임을 묻고 해결요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날 일정으로 전태일 다리에서 손배가압류에 맞선 노동자들이 전태일 평전을 낭독하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문재인 정부에서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노동자 손배가압류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에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 2020, 노동자 손배가압류 현황발표 현장

**사례증언대회 | 손배가압류에 맞선 노동자 이야기**



▲ 손배가압류에 맞선 노동자 이야기, 현장사진

손배현황발표를 하고 청와대에 대정부요구안을 전달한 날, 자리에 함께한 노동자들과 함께 <2020 손배가압류에 맞선 노동자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례증언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증언대회는 코로나19로 현장에는 참가자와 기자들만 참석해 진행했고, 대신 손잡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시작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이후 3년동안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손배가압류가 최소한의 자구책이라는 경영계 입장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은 어떤지 ▲회사의 불법이 드러나도 손배가 취하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사례증언 ▲내가 하지도 않은 행위가 소장에 적시되어 있는데도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증언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차례로 들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중계 영상 외에도, 『2020 노동권과 손배가압류』 자료집에 구술기록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잡고 유튜브 페이지를 통해 주제별 클립영상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변호사집담회 | 노동자의 변호인, '손배가압류'를 말하다



▲ 손배가압류에 맞선 노동자 이야기, 현장사진

‘손배가압류 알림의 달’ 세 번째 일정은 노동자들의 변호인들을 통해 손배가압류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노동권 침해 사례들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주노총법률원 신인수 변호사의 사회로,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차곤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의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법률원 울산사무소 정기호 변호사,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우지연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패널로 함께 했습니다. 참석한 변호인들은 “노동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닌 일터”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중계 영상과 『2020 노동권과 손배가압류』 자료집에 구술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후 주요 부분을 클립영상으로 편집해 손잡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 노동현장간담회 | 손잡고 활동 동력, ‘손잡고 노동현장’



▲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손잡고는 노동현장간담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손배가압류 피해 노동현장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각 노조의 재판상황과 투쟁경과, 손배가압류 당사자인 조합원들의 실태를 확인하고, 손잡고 활동 경과 및 계획 등을 공유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각 노동현장의 상황에 맞춰 현장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간담회 외에 현장별 국회면담과 국정감사기간 국회질의, 탄원서 조직 등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에는 총 8차례 노동현장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등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따라 모임을 할 수 없는 날들도 있었는데요, 노동탄압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무관하게 벌어진다는 점을 깨닫는 시간

이었습니다. 연대와 소통을 위해 온라인 회의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게이츠지회, 한세대학교지부, 현대차비정규직울산지회(신규조합원) 등 3개 노동조합이 새로 간담회 참여단위가 되었습니다. 각 노동조합과 소속조합원들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위협성 공문을 받는 등 노동권 위축 사례를 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위기극복’이 전국민 슬로건으로 내걸린 지금, 여전히 전세금마저 가압류하는 무자비한 기업의 반노동적 행태를 증언했습니다.

### [노동현장간담회]

2020.01.31.	제43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의
2020.03.11.	제44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의
2020.04.08.	제45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의
2020.05.22.	제46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의
2020.06.26.	제47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의
2020.07.31.	제48회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의
2020.09.25.	제49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의
2020.10.23.	제50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의

### 모의법정 | 일방적 법인분할과 파업권, 예비법조인의 치열한 변론!



▲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인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제6회 대회를 예비법조인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서울지방변호

사회에서 후원과 함께 공동주최로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도 공동주최로 함께 했습니다.

제6회 대회 주제는 원청의 ‘불법파견’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청구입니다. 5월 공고해 전국 14개팀(52명)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가하여 6월 예선을 거쳐 8팀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개최이래 처음으로 결선까지 비대면심사로 진행했습니다.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송영섭 변호사는 “제6회가 진행되는 동안 역대 재판부들이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대회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역대 가장 치열한 논의 끝에 순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열린 예선심사는 권오성 교수(문제출제위원장, 성신여대 법과대학),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가 맡았습니다. 본 대회 재판부는 권두섭 변호사(심사위원장, 전 민주노총법률원장), 고윤덕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 김상은 변호사(법무법인 새날, 민변 노동위원회), 박은정 교수(인제대 법과대학), 이용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맡았습니다.

재판장을 맡은 권두섭 변호사는 심사평에서 “노동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사건들을 꼽자면 그 중에도 상위에 있는 사건이 수역, 수십억 단위의 손해배상 사건”이라며 참가자들이 끝까지 경연을 완주한 것에 대해 격려했습니다. 이어 “변호사는 승소라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므로 판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노동사건은 판례 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판례의 변경까지도 늘 시도해봐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6013번팀(서강대 로스쿨 안우혁, 임주연, 박건우)이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에 선정되었습니다. 6013번팀은 “재판부로부터 논리전개가 우수했으며, 서면작성의 완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맞춘 인원만으로 진행했습니다. 본 대회 하루 직전 거리두기 방침이 격상됨에 따라 급히 비대면으로 대회를 치러야 했는데, 향후 재난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에 대한 대회지침이 필요함을 인지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대회를 빛내준 예비 법조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 함께한 사람들]**

- 주최 : 손잡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후원 : 국회의장(시상), 법무부장관(시상), 서울지방변호사회
-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집행위원회 소개
  - 집행위원장 : 송영섭(손잡고 운영위원/ 전 금속노조법률원장)
  - 집행위원 : 배춘환, 박래군, 박병우, 신인수, 안진걸, 유금분, 윤지영, 이남신, 이양구
  - 간사 : 윤지선(손잡고)
  - 문제출제위원 : 권오성(교수/성신여대), 류하경(변호사/민변), 하태승(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
  - 재판부 : 권두섭(재판장/변호사), 고윤덕(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오성(교수/성신여대), 박은정(교수/인제대), 김상은(변호사/법률사무소새날), 이용우(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인권이사)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 수상자]**

- 국회의장상  
6013번팀(서강대 로스쿨 안우혁, 임주연, 박건우)
- 법무부장관상  
6007번팀(연세대 로스쿨 조예리, 유들, 이지민)
- 장려상  
6004번팀(이화여대 로스쿨 김잔디, 양혜민, 김지현)  
6006번팀(고려대 로스쿨 이선욱, 윤성훈, 선혜원)
- 노란봉투법상  
6002번팀(고려대 로스쿨 최소연, 광경민, 최기선),  
6003번팀(고려대 로스쿨 김수아, 김서현, 백승원),  
6012번팀(고려대 로스쿨 최창윤, 아주대 로스쿨 신현민, 한국외대 로스쿨 윤나라),  
6014번팀(경희대 로스쿨 김예덕, 강내권, 홍기수)

**[모의법정]**

- 2020.05.11.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공고 및 접수시작
- 2020.06.03. 제6회 모의법정 문제출제위원회의
- 2020.06.11. 제6회 모의법정 접수마감(14팀)
- 2020.06.15. 제6회 모의법정 문제출제
- 2020.07.11. 제6회 모의법정 서면심사시작
- 2020.07.15. 제6회 모의법정 예선 종합심사

2020.07.17.	제6회 모의법정 서면심사결과발표
2020.08.17.	제6회 모의법정 본선진출팀 준비서면 제출 마감
2020.08.21.	제6회 모의법정 비대면대회로 전환 공지
2020.08.22.	제6회 모의법정 각팀 변론영상 제출마감
2020.08.30.	제6회 모의법정 본선 비대면 심사 마감
2020.09.20.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시상식
2020.09.21.	“판례를 바꾸려 시도하는 법조인이 되길”-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강대팀 국회의장상 선정(보도자료배포)

**국가손배대응모임 | 쌍용차 경찰 가압류 10년만에 해제**

국가손배대응모임은 노동권이나 집회·시위와 같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제기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2017년 5월 11일, 쌍용자동차 지부가 국가손배 피해당사자 단체 및 개인들에게 ‘함께 대응하자’며 손을 내밀었으며, 손잡고는 모임에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쌍용차 국가손배 당사자 간담회

경향신문 2020년 02월 05일 수요일 012면

**“경찰의 쌍용차 손배 청구 부당”  
국회의원 79명이 탄원서 제출**

대법에 “기본권 우위 판결을” 가압류를 청구했다. 해고노동자들은 1·2심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배상액수에 대해 2013년 1심은 14억1000만원, 2015년 2심은 11억6760만원으로

김득중 지부장 “뜻밖의 위로”  
대법원이 심리 중인 ‘쌍용자동차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에 더불어

▲ 국회의원 탄원서, 대법원 제출

2020년 1월,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쌍용차 국가손배 사건을 두고 79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020년은 민갑룡 전 경찰청장의 퇴임,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도 있었습니다. 이를 앞두고 국가손배대응모임은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에서 쌍용차 국가손배 소 취하 권고안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국회를 통해 질의서

를 전달했습니다. 결론은 전 청장도, 신임 청장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사실상 자체 인권침해진상조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 21대 국회, 국가손배 소취하 결의안 발의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중심으로 117명 국회의원이 참여한 “쌍용차 국가손배 사건 소취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한편, 20대 국회에 발의된 ‘괴롭힘소송 금지 특례법’(민사소송특례법,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은 2019년 국회에서 한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20대 국회 만료에 따라 폐기되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2020년 12월 29일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본권 행사가 돈으로 가로막히지 않도록 해당 법안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 [국가손배대응모임]

#### \* 국가손배대응모임 참여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 투쟁본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생명평화결사, 유성기업 범시민 대책위원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진보연대,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

서는 돌려차기 등 총 29개 단체

**\*회의**

- 2020.01.28. 쌍용차 국가손배 당사자 간담회
- 2020.07.09. 쌍용차 국가손배 당사자 간담회
- 2020.07.22. 쌍용차 국가손배 당사자 간담회
- 2020.08.17. 쌍용차 국가손배 당사자 간담회
- 2020.03.19. <국가손배대응모임 회의> 국가손배 관련 대법원 대응 논의

**\*주요활동**

- 2020.01.15. 국가손배 각 정당 국회의원 탄원서 요청
- 2020.02.03. 쌍용차 국가손배 철회를 위한 국회의원 79인 탄원서 대법원 전달
- 2020.05.04. 괴롭힘소송금지법 입법의견 국회 전달
- 2020.07.07.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쌍용차 손배 관련자료 국회 전달(민주당)
- 2020.07.09. 쌍용차지부 참고인채택 관련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 자료 국회 전달(정의당)
- 2020.07.17.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질의서 전달(정의당)
- 2020.07.20. 쌍용차 국가손배 사건에 대한 21대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의견서(요청안) 전달
- 2020.09.21.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상정을 위한 기자회견(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대표발의) “쌍용차 11년 갈등, 이제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 학술연구 활동**

**국회토론회 | 노동권과 손배가압류의 현주소, 법개정의 필요성**

앞서,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질의 했는데, 다수가 법개정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의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입법통과는 순항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11월 손잡고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안호영, 양이원영, 윤미향, 임종성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노동권과 손배가압류의 현주소, 법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제도개선위원들이 다듬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의 의견, 학계 전문가의 의견, 고용노동부의 입장,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시민사회의 입장을 두루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손배가압류 제도를 민사법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검토하자는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대해 참석단위 모두 인상적이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또한 현재 손배해상제도가 헌법을 떠나 민사상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지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토론회는 코로나19로 기자들만 출입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를 했습니다. 구술 전문은 별도의 자료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손잡고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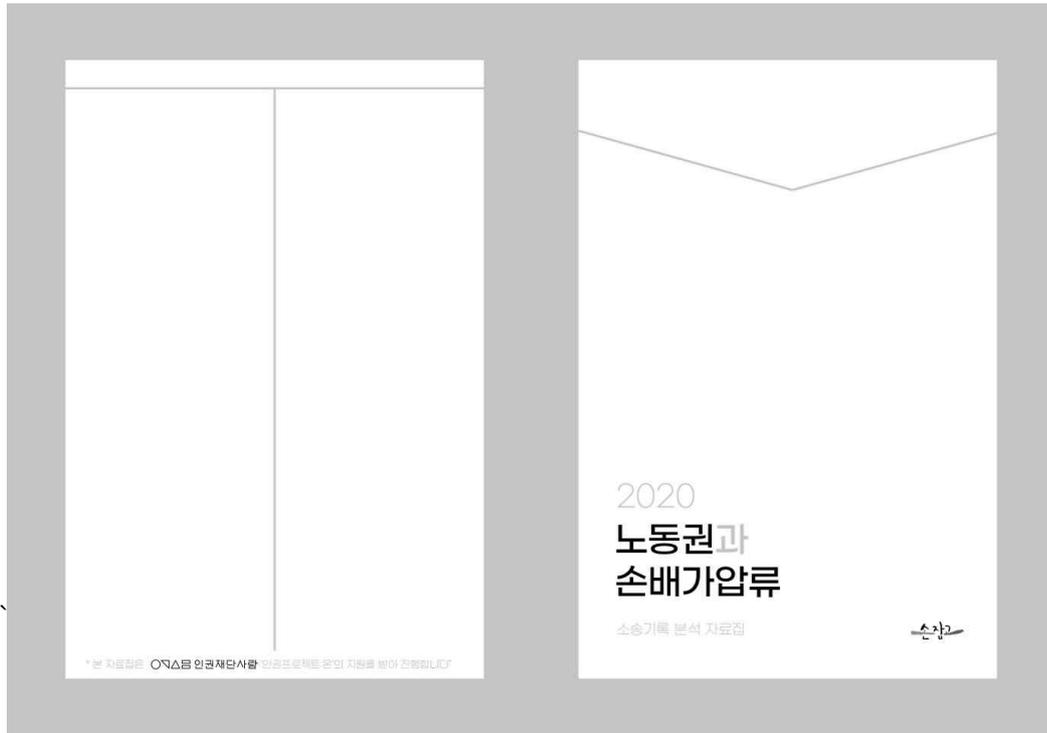
▲ 국회토론회 '노동권과 손배가압류의 현주소 법개정 필요성' 현장

## 자료집 | 2020 노동권과 손배가압류

손잡고는 2020년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을 받아 소송기록분석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2020 노동권과 손배가압류>는 ▲현존하는 노동자 손배가압류 관련 소송기록을 수집해 기록을 보존하고,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주요 사건을 독자에게 소개하고, ▲각계 의견(노동계, 법조계, 학계, 경영계, 입법기관)을 담아 손배가압류의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자료집은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국회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를 막론한 모든 국회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본

문은 손잡고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잡고는 향후에도 손배가압류와 관련한 기록을 수집할 것입니다. 나아가 수집된 자료를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할 수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2020 노동권과 손배가압류-소송기록 분석 자료집』

### 손배피해기록 | 코로나도 멈추지 못한 손배 노동탄압!

2020년, 코로나19의 기승에도 노동현장의 손배가압류 현실은 변치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올해도 현장방문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배에 맞선 노동자들의 증언을 듣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사자가 허락한 경우 기록의 일부는 ‘인터뷰’ 형태로 기고되기도 합니다. 기록이 기고되지 않더라도, 손잡고의 다른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2020년 손배피해기록-당사자 방문면담]

- |             |                   |
|-------------|-------------------|
| 2020.01.08. | 한국지엠비정규직창원지회 간담회. |
| 2020.01.10. | 일진다이아몬드지회 간담회.    |
| 2020.06.05. | 한세대지부 손배대상자 면담    |
| 2020.06.10. | 한진중공업 손배대상자 면담    |

2020.06.24.	현대중공업지부 면담
2020.07.01.	현대차 비정규직 손배 당사자 면담
2020.10.17.	쌍용자동차 국가손배 당사자 면담
2020.10.27.	KEC 손배 임금압류 당사자 면담
2020.11.20.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면담



▲ 한진중공업지회 방문



▲ 한세대학교지부 방문



▲ 현대중공업지부 방문



▲ 현대자동차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방문

### 손배실태조사 | 값을 수 없는 돈, 돌아오지 않는 동료- 2020반짝논문상 수상

손배가압류가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위 논문이 참여연대부설 참여사회연구소의 <논문공모전>에서 수상했습니다!(해당 논문은 손잡고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연구협업에 높은 평가를 주었다고 합니다(아래 수상평 참조). 논문에 함께한 박주영 박사님, 최보경 선생님, 김란영 선생님, 박형근 선생님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노동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연구자분들은 상금의 일부를 2차 연구를 위한 지정기탁금으로 후원해주셨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손배가압류의 폐해를 알리는 2차 연구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 논문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가 진행한 손해배상·가압류 노동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회사측과 국가에 의한 손배가압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건강실태를 연구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이 글은 학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으며, 현장 활동가와 연구자의 콜라보를 통해 집필되었다는 점 역시 논문의 매력을 배가하였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이러한 참신하면서도 진지한 주제의 연구를 우수논문으로 선정하는 것이 참여사회연구소의 <논문공모전>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는데 심사위원들의 견해가 일치하게 되었다. 본 심사위원들은 앞으로도 한국에서 이렇게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협력 속에 사회현상을 현장의 자료와 이론적 토대라는 양 날개를 통해 분석하는 연구들이 나오기를 고대한다.”

## ■ 지원 활동

### 지원연계 | 성심수녀회와 손잡고!

2020년에도 성심수녀회의 연대를 받아 피해노동자 가구에 학비지원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심수녀회는 2015년 첫 만남 이후 매년 손잡고와 연계해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손잡고는 내부 논의를 거쳐 손배피해 가구 가운데 노란봉투캠페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노동현장과 현재 압류가 진행 중인 당사자 가운데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5가구에 학비지원을, 5가구에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연대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성심수녀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심수녀회 마들렌 소피센터 교육비(보육비) 신청서

1. 성명				
2. 생년월일		성별		
3. 본적				
4. 주소 (보호자)			연락처	
5.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직업	기타사항
자녀 통장	계좌번호	은행:	계좌주:	

본인은 귀 재단의 교육비 지원자가 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 이에 신청 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자 : \_\_\_\_\_

보호자 : \_\_\_\_\_

재단법인 성심수녀회 소피센터 귀중

## ■ 연대 활동

### 노동현장연대 | 손배가압류에 맞선 노동현장과 손잡고!

2020년에도 손잡고는 손배노동현장의 ‘손’이 되어 현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를 지원했습니다. 신속함이 요구되는 현장 상황에 대한 기고나, 성명, 탄원, 위원회 참여 등 연대활동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각 노동현장별 창립기념일, 후원주점, 송년행사 등 기쁜 일에도, 장례, 열사대책위, 추모문화제 등 슬픈 일에도 여건이 닿는 한 함께 했습니다.



▲ 고 김주중 쌍용차 조합원 2주기



▲ 아사히비정규직지회 후원주점



▲ "11년만에 해고자 출근" 기자회견



▲ 배재형 열사 5주기 주도식



▲ 노동현장 재판참관(유성 부당노동행위)



▲ 노동현장 기자회견 연대(창원지엠)



▲ 금속노조 투쟁결의대회(아사히글라스)



▲ 공동기자회견 실무지원(유성기업 손해)



▲ 김진숙 복직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KEC 손배당사자 정년퇴임식 참석

## ■ 기고활동

손잡고는 노동현장의 상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구성원들이 언론 기고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각 기사는 손잡고 홈페이지 '언론모음'을 통해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

습니다.

## ■ 회원활동

### 제5회 회원총회 | 회원들과 손잡고!

손잡고는 2020년 3월 25일, 인권재단사람 2층 한터에서 제5회 손잡고 회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부금영수증민간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개정된 정관에 맞춰 2020년부터는 3월에 총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5회 회원총회는 인선총회가 있는 회기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이긴 했지만, 인선총회만큼 방역지침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임 전 회원여러분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집을 사전에 배포하고 의견을 별도로 받기도 했습니다.

기존 상임대표인 배춘환 대표를 비롯해 박래군, 박병우, 송영섭, 안진걸, 유금분, 윤지영, 이남신 운영위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재신임키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활동위원회 강화를 위해 법조계에 신인수(변호사) 운영위원, 문화예술계 이양구(연극인) 운영위원을 추가 선임했습니다. 업무감사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 제5회 손잡고 총회 현장

### 뉴스레터 | 정기 뉴스레터 “손깍지”

손잡고의 정기 뉴스레터 “손깍지”는 회원여러분과 손잡고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손잡고 회원이 아닌 시민여러분에게 손잡고 활동을 정기적으로 알리고자 만든 온라인 소식지입니다.

2020년에는 총 3회의 “손깍지”를 발행했습니다. 손잡고 활동과 재정 및 납부 확인, 손배가압류 관련 언론소식, 노동현장소식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손



손잡고 뉴스레터  
손각지

각지는 회원이 직접 알려주신 이메일 외에도 문자메시지로도 발송을 하고 있으며, 손잡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소식지- 손각지 3회, 손잡고편지 3회]**

- 2020.01.23. <손잡고편지>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20.04.24. <뉴스레터> 손각지 제9호 발행
- 2020.07.21. <뉴스레터> 손각지 제10호 발행
- 2020.09.29. <손잡고편지> 추석인사 회원편지 발송
- 2020.12.31. <손잡고편지>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20.12.31. <뉴스레터> 손각지 제11호 발행

## 6. 활동 평가

### 1) 2020년 사업계획 수행 결과

#### ① 모금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운영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100인 회원배가활동’을 전개할 계획”, “사업비 확충을 위해 공모사업 등 사회적 재원을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도 계속”

#### - 수행 결과

• 회원배가운동 : 신규회원 18명, 탈퇴 29명으로 신규회원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회원탈퇴가 이어져 결과적으로 작년 대비 회원 수가 11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전반적으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쉽지만 적극적으로 회원배가운동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 사업비 공모 : 2020년 재원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비 공모신청을 진행했습니다. 4월, 인권재단사람 ‘인권프로젝트:온’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법제도개선활동, 감시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재원마련을 위해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진행하는 ‘2020 공공상생연대 사업비 공모’에도 지원했습니다. 해당 비영리단체 부문에서 1억원 지원에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기금으로 2021년 ‘손배가압류 아카이브’ 및 캠페인활동을 진행합니다.

• 지정기탁 : 손배가압류 노동자 피해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한 박주영 박사가 손잡고 활동가와 공저한 논문 「값을 수 없는 돈, 떠나는 동료, 아픈 몸 : 2018 손해배상 가압류 노동자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 게재)가 참여연대 반짝 논문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공저자 3인이 후속연구를 위한 사업비로 상금의 일부를 손잡고에 지정기탁했습니다. 2021년 학술연구활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 ② 입법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법률가 가운데 운영위원 총원 및 활동위원회 강화, 법제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및 법제도개선활동을 강화”, “모의법정은 재원마

련을 위해 공동주최와 사업비 확보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보고회 등을 적극 추진”, “21대 총선 이후 법안과 입법 활동을 점검하고 21대 국회에서 두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준비”

- 법제도개선위원회 :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법률원장이 운영위원회에 결합했습니다. 이후 4차례 회의를 통해 기존 제출한 노란봉투법 점검 및 괴롭힘소송금지법안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 법제도개선활동 : 대법원에 계류 중인 주요사건 네 가지(쌍용차 국가손배, 쌍용차 회사손배, 유성기업 회사손배,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손배)에 대한 전문가의견서를 받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선고에 참관하고, 재판결과에 대한 논평, 탄원서를 조직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점검해 새로 내놓은 ‘노란봉투법’을 21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소개하고 발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 노란봉투법 : 안타깝게도 20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진행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습니다. 2020년 21대 국회 총선을 앞두고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정책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21대 국회 원내 정당 모두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통과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점검한 ‘노란봉투법’ 초안을 환노위에 전달하고, 단체 차원의 전문가 검토 및 국회 입법검토를 마쳤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21대에서는 폐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괴롭힘소송금지 특례법 : 손잡고가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손배대응 모임에서 참여한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끝내 폐기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21대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해당 법안 역시 폐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 노동현장간담회 : 2020년에도 손배소 노동현장의 참여로 8차례 노동현장간담회를 수행했습니다. 노동현장과 함께 공동기자회견, ‘손배가압류알림의달’ 캠페인을 통해 노동현장의 손배가압류 관련 이슈를 알렸습니다. 손배사례증언대회를 함께 기획하고, 언론 기획기사에 참여하고, 대정부요구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 국가손배대응모임 : 손잡고가 간사단체로 참여한 국가손배대응모임의 활동으로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의 소취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상반기 20대 국회 79명 국회의원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21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질의, 소취하 국회 결의안(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대표발의) 연대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경찰청의 확고한 입장으로 소취하는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국가손배 당사자들과의 현장간담회를

- 모의법정 :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도 전국 로스쿨 재학생으로 구성된 14팀의 열띤 참여와 변론으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이 대회를 하루 앞두고 격상되어 대회 직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고충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경험을 발판삼아 향후 재난상황에 따른 비대면 진행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③ 지원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시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긴급모금을 통해 지원”

#### - 수행 결과

- 성심수녀원 연계 : 2020년에도 성심수녀원에서 장학금과 보육비 지원 연계사업을 제안해주었습니다. 장학생 5명, 보육지원 5가구, 생활비지원 1가구를 지원 연계했습니다.

- 긴급법률기금지원 : 원종복지관 손배, 구상금청구 대상자의 법률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법률기금모금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12월 26일~2020년 3월 6일까지 총 183건의 기부참여로 7,304,028원을 모금했습니다. 전액 긴급법률기금 대상자의 법률비용으로 지급했습니다.

#### ④ 연대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노동현장과 시민사회 요청에 따라 운영위 논의를 거쳐 연대사업 진행”

##### - 수행 결과

• 노동현장실무지원 : 2020년에도 ‘손잡고 노동현장’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실무지원활동을 펼쳤습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을 앞두고 사회적합의 파기를 막기위한 활동 실무 지원, 유성기업 반론보도권 남용 언론모니터링 활동 및 보고서 발표, 손배가압류 관련 언론기획, 원종복지관 손배 피해노동자 실무지원, 현장 이슈에 대한 탄원서 조직 등 노동현장의 요청에 따라 활동가가 노동현장을 방문해 손배가압류 문제를 알리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를 노조와 함께 수행했습니다.

• 연대활동 : 손잡고노동현장의 행사, 재정사업, 투쟁결의대회 등에 시간이 닿는 한 연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열사장레위원, ILO협약비준을 위한 시민사회 대응 등 손배가압류 관련 사안은 아니지만 노동권,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시민사회와 연대활동을 이어갔습니다.

#### ⑤ 의제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손배가압류를 알리는 기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손배가압류 문제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낼 것”

##### - 수행 결과

• 언론활동 : 2020년에는 손배가압류와 관련해 11건의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손배가압류 노동현장 상황을 알리기 위해 각 현장과 매체를 연결하는 역할도 이어갔습니다. MBC, KBS 등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과 손배가압류 관련 기획을 시도했으나, 현재 보류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면매체와

는 활발한 협업작업이 가능했습니다.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에 손배가압류 및 현장이슈와 관련한 기획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 ⑥ 감시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손배가압류 현황 발표, 소송기록 수집 및 분석 자료집 발간, 개별당사자 피해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구술작업 등을 계획”

- 수행 결과 :

• 손배현황집계발표 :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들어 첫 손배현황집계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전태일열사 50주기에 맞춰 11월을 ‘손배가압류 알림의 달’로 선포하고, 이시대 전태일들의 노동권을 옥죄는 대표 수단으로 손배가압류 문제를 이슈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정, 취하된 건도 있지만, 사건 수로는 소송이 늘었다는 점, 대상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미가입 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정부차원의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대정부요구안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 소송기록 분석 자료집 발간 : 『2020 노동자와 손배가압류』라는 이름으로 ‘소송기록 분석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확보한 재원과 기한 상 2020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목록화, 전체 사건이 아닌 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받은 데 그친 점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021년 ‘손배가압류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해당 자료는 각 유관기관(국회, 노동부, 법무부, 청와대 등)에 전달했습니다. 처음으로 회원들에게 책자로 된 결과물을 우편발송하기도 했습니다.

## ⑦ 캠페인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문화예술분야 운영위원 확충 및 활동위원회 구성”, “복잡하고 어려운 손배가압류 문제를 시민의 눈높이로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수행 결과 : 결과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화기획과 캠페인은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문화기획위원회를 구성해 방역지침을

지키며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았지만, 비용대비 실효성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상했던 계획은 2021년에 다듬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 ⑧ 회원활동

- 지난 총회 보고내용 : “총회는 정관에 따라 3월 내에 개최”, “정기 뉴스레터 <손각지>는 매월 발행에서 분기별 발행으로 전환”, “영상상영회 등 회원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사업 조직”

- 수행 결과 :

- 제5회 총회 : 3월내 총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라 기부금민간단체 수행 의무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부득이 온라인 총회로 전환하는 등 혼란이 있었으나, 안전에 따른 자료를 미리 회원들에 전달해 의견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 뉴스레터 <손각지> : <손각지>는 3회 발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진 사업들이 하반기에 몰려 부득이 3,4분기 소식지는 묶어서 발행했습니다.

- 공개참여사업 확대 : 이 역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개참여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모든 사업들에 영상중계를 진행해 온라인으로나마 회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총평

2020년, 시민사회단체를 넘어 사회 전체가 코로나19와 그에 따라 시시각각 급변하는 방역지침에 적응하는 기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노동현장의 탄압은 계속되고, 탄압의 수단으로 손배가압류는 멈춤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손잡고는 2020년,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도 단체 목표인 법제도개선활동과 피해노동현장에 대한 지원활동 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회원배가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18명의 신규회원이 손잡고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손놓지 않고 계속 손잡고와 함께 해주시는 회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

회원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자 사업비 마련을 위해 공모 참여 등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일부는 노동조합의 연대기금과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업제안 등으로 재정부담을 나누어 계획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 주요 활동목표에 따라 실행된 분야별 활동은 사업별 기획 취지와 기대효과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만, 방역지침에 따라 일부 행사들은 비대면으로 치러진 점이 주최입장으로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코로나19에 적응해 나가며 비대면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운영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사무국 구성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올해도 1인 활동가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각 운영위원이 책임과 역할을 분담해 활동을 지원하고, 2020년에는 각 활동위원회를 복원해 활동지원 및 사업수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7. 2020년 활동일지

- 2020.01.01 [회원사업] 기부금영수증 발급 비영리민간단체 시행
- 2020.01.02 [연대사업] <연대활동> 새해 첫 소망은 톨게이트사태 해결 1,500인 선언
- 2020.01.03 [연대사업] <노조실무지원> 쌍용차 사회적 합의파기 대응회의
- 2020.01.06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이행점검회의
- 2020.01.07 [연대사업] <노동현장실무지원> 쌍용차 해고노동자 11년만에 출근 기자회견
- 2020.01.08. [연대사업] <연대활동> 검찰의 봐주기 늦장수사 중단! 한국지엠 카허카젼 구속 수사하라! 기자회견
- 2020.01.08.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한국지엠비정규직창원지회 간담회.
- 2020.01.09. [추모]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 17주기
- 2020.01.09. [연대사업] <연대활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
- 2020.01.09. [연대사업] <연대활동> [공동성명] 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폭력을 규탄한다! -유성 노동자 실형선고에 대한 규탄 성명
- 2020.01.10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유성기업 배임 2심 재판 방청
- 2020.01.10.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일진다이아몬드지회 간담회.
- 2020.01.11. [연대사업] <연대활동> [집회] 파렴치한 기륭전자 최동열 지금 당장 체불 임금 지급하라!
- 2020.01.15. [연대사업] <연대활동> 2020년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운동 방향 공유와 협력 강화를 위한 사회단체/종교단체 간담회
- 2020.01.13. [운영회의] 제38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20.01.13. [연대사업] <연대활동> 쌍용자동차는 사회적 합의 파기를 사과하고 조건 없이 즉각 복직 이행하라! 1천인 선언
- 2020.01.13. [연대활동] <노동현장실무지원> 무기한 휴직연장에 따른 쌍용차 미복직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 2020.01.14. [언론활동] <기획> KBS 시사직격팀 면담
- 2020.01.15. [법제도개선사업] <국가손배대응모임> 국가손배 정당 탄원서
- 2020.01.14. [언론활동] <기획> MBC 스트레이트팀 면담
- 2020.01.17. [연대사업] <노조실무지원> 쌍용차 사회적 합의파기 대응회의
- 2020.01.21. [연대사업] <노동현장실무지원> 쌍용차 사회적합의 파기 규탄 시민사회 계획 발표 기자회견

- 2020.01.21. [연대사업] <노동현장실무지원> 쌍용차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 / 집중문화제
- 2020.01.23. [회원사업] <손잡고편지>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20.01.28. [법제도개선사업]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 국가손배 당사자 간담회
- 2020.01.29. [연대사업] <연대활동> 이시대 전태일 50인의 요구 기자회견
- 2020.01.31. [법제도개선사업] <노동현장간담회> 제43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의
- 2020.02.03. [연대사업] <연대활동>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5천인 선언
- 2020.02.03. [연대사업] <노동현장실무지원> 쌍용차 사회적합의 파기 규탄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
- 2020.02.03. [법제도개선사업]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 국가손배 철회를 위한 국회의원 79인 탄원서 대법원 전달
- 2020.02.04. [연대사업] <노동현장실무지원> 쌍용차 사회적합의 파기 규탄 1인시위 (안진걸 운영위원)
- 2020.02.05. [언론활동] <기고> 경향신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직장 괴롭힘과 무더기 보복소송
- 2020.02.05. [연대사업] <연대활동>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2차 촛불행동 준비위
- 2020.02.07. [연대사업] <연대활동> 아사히비정규직지회 투쟁6년 현수막연대
- 2020.02.08. [연대사업] <노동현장실무지원> 쌍용차 사회적합의 파기 규탄 1인시위 (박래군 운영위원)
- 2020.02.11. [언론활동] <기고> 한겨레 시론, 문재인 대통령의 5년전 약속(윤지영 운영위원)
- 2020.02.11. [연대사업] <노동현장실무지원> 유성기업 언론탄압 대응 회의
- 2020.02.13. [언론활동] <기고> 시사인, 노동자 두 번 죽이는 공정하지 않은 법(윤지선 활동가)
- 2020.02.13.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유성기업 노동자 손배 1심 재판 참관
- 2020.02.13.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고용노동행정개혁위대응 회의
- 2020.02.13. [연대사업] <연대활동> 인권단체 공동성명 “한국가스공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한국가스공사에 ‘해고 없는 직접 고용 전환’을 촉구한다”
- 2020.02.17. [연대사업] <노동현장실무지원> 유성기업 언론탄압 토론회 준비회의
- 2020.02.19. [연대사업] <노동현장실무지원> 유성기업 언론대응 모니터보고서 발표 (민주언론시민연합 협업)
- 2020.02.24. [감사] 2019년 회계감사-사업감사

- 2020.02.26. [연대사업] <연대활동>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 “문제해결은커녕 분향소 철거가 웬말인가! 100일이 되기 전에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문제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다해 해결하라!”
- 2020.03.03. [운영회의] 제39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20.03.09. [공모지원] 2020인권재단사람 인권프로젝트:온 선정
- 2020.03.09. [연대사업] <연대활동> 한국마사회 적폐권력 청산, 문중원 열사 노동사회장 장례위원 참여
- 2020.03.10. [연대사업] <연대활동>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집시법 11조 개악 반대 시민사회 의견서
- 2020.03.11. [법제도개선사업] <노동현장간담회> 제44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의
- 2020.03.17. [추모]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5주기
- 2020.03.18. [공모지원] 2020인권재단사람 인권프로젝트:온 협약식
- 2020.03.18. [회원사업] 2020 손잡고 회원총회 개최공고
- 2020.03.19. [법제도개선사업] <국가손배대응모임> 국가손배 관련 대법원 대응 논의
- 2020.03.24. [언론활동] <기고> 시사인, 일진다이아몬드 본사에서 일어난 일(윤지선 활동가)
- 2020.03.25. [법제도개선사업] <기자회견> 국회의 문턱을 넘고자 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 노동권 침해 악법, 손배가압류 개선방안을 질의하며
- 2020.03.25.-2020.03.31.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총선 각 정당 노동자 손배가압류 관련 질의서 전달
- 2020.03.25. [회원사업] <정기총회> 2020년 제5회 손잡고 회원총회
- 2020.03.31. [회원사업] 2019년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보고
- 2020.03.31. [연대사업] <연대활동> 코로나19 대응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 2020.04.08.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2020 총선, 노동자 손해배상 가압류에 대한 각 정당 질의 결과 발표
- 2020.04.08. [법제도개선사업] <노동현장간담회> 제45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진행
- 2020.04.20.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
- 2020.04.20. [운영회의] 제40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20.04.24. [회원사업] <뉴스레터> 손깎지 제9호 발행
- 2020.04.29. [언론활동] <기고> 시사인, 유성기업 000팀장입니다(윤지선 활동가)
- 2020.04.29. [연대사업] <연대활동> 시민사회단체공동성명 “서울시와 경찰청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비정규직 긴급행동 금지 통보를 철회하라”
- 2020.04.30. [연대사업] <연대활동> 이천물류센터 건설현장 참사 시민사회단체 공동

- 성명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 2020.05.04. [연대사업] <연대활동> 쌍용차 해고자 11년만에 복직 인사 기자회견
- 2020.05.04. [법제도개선사업] <국가손배대응모임> 괴롭힘소송금지법 입법의견 국회 전달
- 2020.05.06. [연대사업] <노동현장실무지원> 노조파괴 멈춤없는 유시영회장 엄벌촉구 탄원서
- 2020.05.08. [연대사업] <연대활동> 발주처와 원청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 탄원서 서명
- 2020.05.08. [연대사업] <연대활동> 하이디스지회 배재형 열사 추모제 참석
- 2020.05.08. [연대사업] <노동현장실무지원> 기자회견-노동3권 파괴한 비용 회사돈으로 처리한 유성기업 유시영을 대법원은 엄중하게 처벌하라
- 2020.05.11. [법제도개선사업] <모의법정>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공고 및 접수시작
- 2020.05.14. [연대사업] <연대활동> 코로나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혐오와 배제를 멈춰라!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 2020.05.14.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배임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형사사건 대법원 선고 재판 참관
- 2020.05.14. [손잡고논평]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이사 배임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회사돈으로 노조파괴, 대법원도 유죄, 유성기업 노조탄압 이제 멈춰라”
- 2020.05.16. [연대사업] <연대활동> 아사히비정규직지회 후원주점
- 2020.05.19. [운영회의] 제41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20.05.20. [지원사업] 두여자이야기(원종복지관 피해자 법률기금 모금) 모집결과 및 사용보고
- 2020.05.21. [연대사업] <연대활동> “국회 앞 집회금지법의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공동성명
- 2020.05.22. [법제도개선사업] <노동현장간담회> 제46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진행
- 2020.05.25.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회의
- 2020.05.26.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재판참관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형사소송 1심 선고
- 2020.06.02. [연대사업] <연대활동>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 코로나 정리해고 한 달, 청와대 즉각 사태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2020.06.03. [법제도개선사업] <모의법정> 제6회 모의법정 문제출제위원회의
- 2020.06.05. [연대사업] <연대활동> 조지플로이드 살해사건 규탄 및 반차별 공동행동

## 기자회견

- 2020.06.05.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한세대지부 손배대상자 면담
- 2020.06.06. [언론활동] <기고> 시사인, 죽은 뒤에야 받은 판결문 ‘회사의 책임이 있음’(윤지선 활동가)
- 2020.06.10.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한진중공업 손배대상자 면담
- 2020.06.11. [법제도개선사업] <모의법정> 제6회 모의법정 접수마감(14팀)
- 2020.06.15. [법제도개선사업] <모의법정> 제6회 모의법정 문제출제
- 2020.06.20. [연대사업] <연대활동> 2020년 세계 난민의 날 공동성명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 2020.06.23. [운영회의] 제42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20.06.24.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현대중공업지부 면담
- 2020.06.24. [연대사업] <연대활동>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 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공동 규탄성명
- 2020.06.25. [손잡고논평] <故김주중 조합원 2주기 공동성명> 언제까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를 당장 철회하라!
- 2020.06.26. [법제도개선사업] <노동현장간담회> 제47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진행
- 2020.06.27. [연대사업] <연대활동> 故김주중 조합원 2주기 추모식
- 2020.06.30. [회원사업]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신고
- 2020.07.01.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현대차 비정규직 손배 당사자 면담
- 2020.07.03.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 및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과 징수내역 정보공개 요청
- 2020.07.07. [법제도개선사업] <국가손배대응모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쌍용차 손배 관련자료 국회 전달(민주당)
- 2020.07.09. [손잡고논평] 광우병 축북 국가손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대법원의 광우병 축북시민에 대한 국가손배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경찰과 법무부는 남은 괴롭힘 소송에 대해서도 즉각 철회하라!”
- 2020.07.09. [법제도개선사업]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지부 참고인채택 관련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 자료 국회 전달(정의당)
- 2020.07.09. [법제도개선사업]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자동차 국가손배 당사자 간담회
- 2020.07.10. [연대사업] <연대활동> 비정규직철폐! 불법파견 엄중처벌! 아사히 투쟁 5년 금속노조 결의대회 참여

- 2020.07.10. [언론활동] <기고> 시사인, 41년을 일하고 수십억 빛이 쌓인 사람(윤지선 활동가)
- 2020.07.11. [법제도개선사업] <모의법정> 제6회 모의법정 서면심사시작
- 2020.07.15. [법제도개선사업] <모의법정> 제6회 모의법정 예선 종합심사
- 2020.07.16. [연대사업] <연대활동> “당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공동성명
- 2020.07.17. [법제도개선사업] <모의법정> 제6회 모의법정 서면심사결과발표
- 2020.07.17. [법제도개선사업] <국가손배대응모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질의서 전달 (정의당)
- 2020.07.20. [법제도개선사업]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 국가손배 사건에 대한 21대 행안위 국회의원 의견서 전달
- 2020.07.21. [회원사업] <뉴스레터> 손깍지 제10호 발행
- 2020.07.22. [법제도개선사업]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 국가손배 당사자 간담회
- 2020.07.22. [연대사업] <노동현장실무지원> 유성기업 손배 대법판결 대응 회의
- 2020.07.24. [연대사업] <연대활동>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하루주점
- 2020.07.27. [운영회의] 제43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20.07.28. [연대사업] <연대활동> 한진중공업 35년 해고자 김진숙 “현장으로 돌아가자!” 복직 응원 기자회견
- 2020.07.29.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유성기업 손배소에 대한 제대로된 판결을 촉구하는 대법원 앞 기자회견 “유성기업 손배소는 노조파괴 최후 수단이다. 대법원은 판결로 노동권 침해하는 기업의 법제도 악용을 멈춰라”
- 2020.07.31. [법제도개선사업] <노동현장간담회> 제48회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진행
- 2020.08.07. [공모지원] 공공상생연대기금 사업비 공모신청
- 2020.08.17. [법제도개선사업] <모의법정> 제6회 모의법정 본선진출팀 준비서면 제출 마감
- 2020.08.17. [법제도개선사업]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차 국가손배 당사자 간담회
- 2020.08.18. [언론활동] <기고> 시사인, 손해배상 위협 달라진 게 없구나(윤지선 활동가)
- 2020.08.20. [연대사업] <연대활동> 국정원 노조파괴 공작 엄벌 촉구 탄원서
- 2020.08.21. [공모지원] 공공상생연대기금 사업비 공모 1차 선정
- 2020.08.21. [법제도개선사업] <모의법정> 제6회 모의법정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비대면대회로 전환 공지

- 2020.08.22. [법제도개선사업] <모의법정> 제6회 모의법정 각팀 변론영상 제출마감.
- 2020.08.30. [법제도개선사업] <모의법정> 제6회 모의법정 본선 비대면 심사 마감
- 2020.09.02. [학술연구]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 40, 2020』「값을 수 없는 돈, 떠나는 동료, 아픈 몸 : 2018 손해배상 가압류 노동자 실태조사」(박주영 외 4인) 논문게재
- 2020.09.03. [연대사업] <연대활동>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투쟁지지선언 기금 전달
- 2020.09.08. [연대사업] <연대활동>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공동성명)
- 2020.09.08. [공모지원] 공공상생연대기금 사업비 공모 2차 발표
- 2020.09.10. [운영회의] 제44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20.09.11. [공모지원] “손잡고 ‘손배가압류 알리미’ 아카이브 사업” 공공상생연대기금 사업비 공모전 비영리단체 1억원 부문 선정
- 2020.09.15. [언론활동] <기고> 경향, 대한문 앞 화단의 씩씩한 추억(박래군 운영위원)
- 2020.09.16. [연대사업] <연대활동> “제15회 전국장애인대회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대집행 비용 1285만원 납부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탄원서 제출
- 2020.09.16.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회의
- 2020.09.16.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초안 정리
- 2020.09.20. [법제도개선사업] <모의법정>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시상식
- 2020.09.21. [법제도개선사업] <모의법정> “판례를 바꾸려 시도하는 법조인이 되길”- 제6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강대팀 국회의장상 선정(보도자료배포)
- 2020.09.21. [법제도개선사업] <국가손배대응모임>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상정을 위한 기자회견(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대표발의) “쌍용차 11년 갈등, 이제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 2020.09.21. [언론활동] <기고> 오마이뉴스, “권리 쟁취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변호인이 되고 싶다”(윤지선 활동가)
- 2020.09.24. [연대사업] <연대활동> 현대중공업 서진이엔지 폭력사태 및 집단해고 규탄 및 해결 촉구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해고와 폭행,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서진이엔지 집단해고 책임지고, 폭력행위 사과하라!”

- 2020.09.25. [법제도개선사업] <노동현장간담회> 제49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진행
- 2020.09.25. [연대사업] <연대활동> 전태일 50주년 시민이 함께 만드는 기념동판 제작 참여
- 2020.09.28.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노란봉투법 자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에 전달
- 2020.09.29. [회원사업] <손잡고편지> 추석인사 회원편지 발송
- 2020.10.05. [법제도개선사업] <손배아카이브> 공공상생연대기금-손잡고 사업계획 협의 회의
- 2020.10.06.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실 면담(민주당 간사)
- 2020.10.07. [운영회의] 제45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20.10.07. [연대사업] <연대활동> 일본 다이도 측량 회사 노동자 손배가압류 사건 법원 제출용 국제탄원서
- 2020.10.08.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일진다이아몬드 손배청구 1심선고 관련 부당손배 규탄 기자회견 연명요청
- 2020.10.14.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회의
- 2020.10.16. [언론활동] <기고> 시사인, 노조파괴 '매뉴얼'대로? 노동권 존중 '헌법'대로!(윤지선 활동가)
- 2020.10.17. [연대사업] <연대활동> 한진중공업 김주익열사 17주기
- 2020.10.17.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쌍용자동차 국가손배 당사자 면담
- 2020.10.19. [연대사업] <연대활동>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 참여
- 2020.10.21. [연대사업] <연대활동> 전태일신문 발행위원 참여
- 2020.10.22. [연대사업] <연대활동> 4.16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약속 이행 촉구 및 10만 청원 국민 동참 호소 기자회견
- 2020.10.23. [법제도개선사업] <노동현장간담회> 제50차 손잡고 노동현장간담회 진행
- 2020.10.27.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KEC 손배 임금압류 당사자 면담
- 2020.11.01.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노동기본권의 뒷, 손배가압류 알림의 달 캠페인
- 2020.11.02.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안호영 의원실 면담
- 2020.11.04.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유성기업 노동자손배 1심 선고
- 2020.11.10.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대법원 계류 사건 전문가 의견서 대법원 전달-쌍용차 회사손배사건 대법원 제출(고려대 김제완 교수)

- 2020.11.11.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손잡고노동현장 전태일 평전 낭독
- 2020.11.11.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손배피해현황발표 및 청와대 서한 전달 기자회견 “노동권을 보장해야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이 가능하다. 정부는 노동3권 무력화시키는 손배가압류 철폐하라!”
- 2020.11.11.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손배노동자 사례증언대회
- 2020.11.15. [공모지원] 참여연대 2020 논문공모전 지원(손배실태조사 연구 논문)
- 2020.11.16. [연대사업] <연대활동> 문중원열사 1주기 추모위원 참여
- 2020.11.17.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노동자의 변호인, 손배가압류를 말하다 - 변호사 집담회
- 2020.11.18. [연대사업] <연대활동> 코레일 네트워크 노동자 파업 문제해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20.11.20. [손잡고논평] 현대차 임원의 노조파괴 개입 사건 2심 판결에 대한 논평 “기업의 ‘불법행위’에 의한 노동자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 2020.11.20. [학술연구] <손배피해기록>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면담
- 2020.11.21. [연대사업] <연대활동> KEC지회 법률비용 마련 연대주점
- 2020.11.23. [학술연구] <토론회> 손배소송의 문제점과 법제도개선의 필요성 - 국회 토론회
- 2020.11.23.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대법원 계류 사건 전문가 의견서 대법원 전달-유성기업 회사손배사건 대법원 제출(성신여대 권오성 교수)
- 2020.11.24. [공모지원] 2020 참여연대 논문공모전 수상작 선정(손배가압류 피해실태조사 연구논문)
- 2020.11.25.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대법원 계류 사건 전문가 의견서 대법원 전달-현대차 비정규직 손배사건 대법원 제출(순천향대 조경배 교수)
- 2020.11.30. [학술연구] <자료집발간> 2020 노동권과 손배가압류, 소송기록 자료집 발간
- 2020.11.30. [연대사업] <연대활동> “한국사회 성차별의 역사이자 현장인 여성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을 촉구합니다” 공동성명
- 2020.11.30. [운영회의] 제46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20.12.01. [연대사업] <연대활동> 김진숙 복직 촉구 시민사회 각계 기자회견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노동자 김진숙은 반드시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 2020.12.11.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손배가압류 자료집 각 유관기관 발송
- 2020.12.19. [연대사업] <연대활동> KEC지회 조합원 정년퇴임식

- 2020.12.21. [추모]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8주기
- 2020.12.22.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전문가 입법검토 의견에 따른 노조법 개정안 수정안 제출
- 2020.12.22. [운영회의] 제47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 2020.12.28. [법제도개선사업] <법제도개선활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임종성 의원실)
- 2020.12.31. [회원사업] <손잡고편지>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20.12.31. [회원사업] <뉴스레터> 손깍지 제11호 발행



# 2020년 손잡고 재정보고

---

---

1. 2020 운영성과표

운 영 성 과 표

제 7(당)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손잡고

(원)

과 목	제 6 (당)기	
	금 액	
<b>I. 사업 수익</b>		<b>54,774,803</b>
<b>C M S 회 비</b>		<b>34,960,003</b>
<b>후 원</b>		<b>5,383,600</b>
개 인 후 원	3,010,000	
단 체 후 원	2,373,600	
지 정 기 탁 후 원		1,094,400
운 영 위 원 후 원		1,136,800
기 타 사 업 수 익		12,200,000
공 모 사 업 : 인권프로젝트 온	7,000,000	
사 업 분 담 금 : 모의법정	5,200,000	
<b>II. 사업 비지출</b>		<b>32,431,401</b>
<b>법 제 도 개 선 사 업</b>		<b>14,897,154</b>
국 가 손 배 대 응 모 임	28,600	
법 제 도 개 선 활 동	288,090	
노 동 현 장 간 담 회	519,640	
모 의 법 정	14,060,824	
<b>학 술 연 구</b>		<b>13,953,791</b>
손 배 피 해 기 록	590,761	
토 론 회	381,000	
소 송 기 록 자 료 집	12,982,030	
<b>연 대 사 업</b>		<b>2,420,200</b>
연 대 활 동 비	2,322,100	
노 동 현 장 실 무 지 원	98,100	

기 타 사 업 비		852,656
운 영 회 의	275,100	
홍 보 비	577,556	
회 원 사 업		142,100
총 회	142,100	
뉴 스 레 터	0	
지 원 사 업		165,500
긴 급 법 률 기 금 지 원	165,500	
III. 사 업 이 익		22,343,402
IV. 운 영 비 지 출		42,893,092
고 정 인 건 비	26,422,600	
단 기 인 건 비	1,670,000	
보 험 공 과 료	5,109,880	
복 리 후 생 비	432,400	
통 신 비	52,462	
소 모 품 비	122,850	
지 급 수 수 료	1,697,000	
기 타 / 사 무 실 관 리 비	3,000,000	
기 타 / 업 무 추 진 비	459,400	
기 타 / 회 계 관 리 비	1,326,000	
기 타 / 대 외 비	200,500	
판 공 비	2,400,000	
V. 운 영 이 익		-20,549,690
VI. 운 영 외 수 익		34,206
이 자 수 익	34,206	
VII. 운 영 외 비 용		7,590
잡 손 실	7,590	
VIII. 당 기 순 이 익		-20,523,074

## ※ 과목 항목 정리

### (1) 사업비 부문

1) 기타사업비 : 고정된 법제도개선활동, 문화기획, 지원활동, 연대활동 외 지출된 사업 관련 항목이 포함됩니다.

① 운영회의 : 사업계획 및 결정을 위해 진행되는 운영위원회의를 위한 진행비

② 홍보비 : 사업홍보를 위한 메일링 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지출된 금액

### (2) 운영비 부문

1) 기타운영비 관련 : 기타운영비로 묶인 금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① 업무추진비 : 행사비 외에 업무진행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야근식사비, 단체 교통카드 충전 등에 사용된 금액

② 사무실관리비 : 손잡고가 사무실을 위탁하고 있는 인권재단사람에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금액

③ 회계관리비 : 2018년부터 분기별 정산보고를 비롯 회계관리를 위해 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과 계약. 매월 지급한 금액.

④ 대외비 : 전 대표 모친상 조의금

2) 판공비 : 상임대표 활동비 지급

3) 복리후생비 : 식대지원

### (3) 운영외 비용 : 잡손실 발생 부분

- 잡손실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금 지출

## 2. 2020 재무상태표

### 재 무 상 태 표

제 7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6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손잡고

(단위 : 원)

과 목	제 7(당)기		제 6(전)기		증감액
		금 액		금 액	
<b>자 산</b>					
I. 유 동 자 산		28,246,973		48,753,760	-20,506,787
(1) 당 좌 자 산		28,246,973		48,753,760	-20,506,787
보 통 예 금		28,235,533		48,753,760	-20,518,227
미 수 금		11,440		0	11,440
(2) 재 고 자 산		0		0	0
II. 비 유 동 자 산		0		0	0
자 산 총 계		28,246,973		48,753,760	-20,506,787
<b>부 채</b>					
I. 유 동 부 채		2,076,600		2,064,200	12,400
예 수 금	23,240		39,780		-16,540
미 지 급 비 용	2,053,360		2,024,420		28,940
II. 비 유 동 부 채		0		0	0
부 채 총 계		2,076,600		2,064,200	12,400
<b>자 본</b>					
I. 자 본 금		0		0	
II. 자 본 잉 여 금		0		0	
III. 자 본 조 정		0		0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V. 이 익 잉 여 금		26,170,373		46,689,560	-20,519,187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26,170,373		46,689,560	-20,519,187
( 당 기 순 이 익 )		-20,523,074		-22,735,851	
자 본 총 계		26,170,373		46,689,560	-20,519,18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8,246,973		48,753,760	-20,506,787

\*자산 미수금 : 기타소득세 미징수분, 2021년에 징수

\*부채 : 유동부채 항목의 예수금과 미지급항목은 고정급여분(12월 급여를 1월 급여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급여분과 소득세 원천징수분이 부채항목에 표기됨)



## 총회 안건 및 승인

---

---

## 안건1. 2020년 회계 및 업무감사 보고 승인

### 1) 회계감사 보고

2020년도 감사보고

총 재무상태

전기이월	48,757,647
수입	70,601,205
지출	91,123,319
차기이월	28,235,533

손잡고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기간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집행과 관리가 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손잡고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용성과 내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박병학



## 2) 업무감사 보고

### 손잡고 2021년 정기총회 업무감사 보고서

본 감사는 손잡고 2020 년도 사업 활동에 대한 업무감사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 1. 감사 방법

업무감사의 실시는 업무보고서 등 업무 관련 서류의 확인 사무국에 대한 질의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 2. 감사 평가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과 이로 인한 활동상의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목표한 사업을 대체로 원만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었던 캠페인과 회원 활동의 일부를 제외하고 모금, 입법, 지원 및 연대, 의제화, 감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100인 회원 배가를 목표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가 도리어 감소하였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회원 유지 및 확대에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2020년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고 2021년 용역연구사업도 늘었습니다. 회계 처리와 업무수행 등에서 사무국 1인 체제로 감당 가능한 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 3. 21.

감사 이태호 *이태호*

## 안건2. 2021년 사업계획(안), 예산안 보고와 승인

### 1 2021 사업계획(안)

주문) 2021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 시 사업계획 변경 및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해주시요.

#### 1) 2021년 주요 활동 목표

### “그대의 손길에 피는 꽃, 손잡고”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수단으로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잡고 활동에 공감하는 시민여러분의 손길을 손배가압류에 맞서 노동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노동현장에 전달하는 활동도 함께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현장에 닿아 따뜻한 봄기운이 됩니다. 그 온기 덕에 노동현장에 연대의 꽃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손길은 연대의 꽃을 피워내는 봄별입니다.

손잡고는 2021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이어갑니다.

- 입법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법 개정을 위한 활동
- 모금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모금운동
- 지원활동 : 손배가압류 피해자 및 노동현장 지원활동
- 의제활동 : 손배가압류 관련 사회적 의제화(기고, 교육, 토론회, 공청회 등)
- 감시활동 : 손배가압류 현황조사 및 사례 기록
- 캠페인활동 :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에 대한 여론형성(공연, 전시, 1인시위 등)
- 회원활동 : 회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 회원배가운동
- 사무처 근무환경 개선 및 사무국 구성 확대

## 2) 2021년 주요 활동 목표에 따른 사업계획안

### 2020년 손잡고 활동계획

항목구분	사업계획	시기	비고
모금활동	CMS-회원배가활동	수시	운영비 확보
	공모사업 지원	수시	사업비 확보
	기타 긴급모금	필요 시	법률기금 등
법제도개선활동	노동현장간담회	월1회	정기사업
	법제도자문위원회 활동	4월부터	자문위 구성 후 활동계획보고
	제7회노란봉투법 모의법정경연대회	2021.4~9	5월 공고, 8월 시상식
	국가손배대응모임	필요 시	
	대정부 관련 활동	수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이행, ILO협약에 맞는 법제개정을 위한 연대 활동
감시활동 (학술연구)	손배현황발표	하반기	
	손배가압류 아카이브	2021.3~11	공공상생연대기금공모사업선정
	손배가압류 노동자 구술사업	2021.3~11	공공상생연대기금공모사업선정 학술연구비 지정기탁
	연구자문위원회 활동	2021.4~	자문위 구성 활동계획보고
지원활동	피해자 지원	필요 시	모금활동 결과에 따라 변동
	지원 연계	요청 시	연계요청서 논의 후 결정
연대활동	손배가압류 노동현장 연대	수시	
	기타 연대사업(성명, 기자회견 등)	수시	손배노동현장에 집중
캠페인활동	공개법정	2021.10	공공상생연대기금공모사업선정 국민참여재판형식 진행
	영상콘텐츠 / 3분판례, 나의사건검색-현장이야기(가칭)	2021.03	공공상생연대기금공모사업선정 3분판례 20회, 나의사건검색 10회 손잡고 유튜브 채널 공개
	기타 홍보 콘텐츠 등	필요 시	
의제활동	손배가압류 관련 기고	수시	
	기타	수시	기획기사 등
회원활동	총회	2020.2	정기사업
	손잡고 뉴스레터 <손깍지>	분기별	정기사업
	기타	필요 시	

### ① 모금활동

- 주요 목표 : 안정적 자원 확보

- 이행 방안 : 사업비 확보 방안으로 공모사업, 뜻이 맞는 단체들과의 적극적 협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가급적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회원배가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 노동현장 손배가압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시 긴급 법률기금 모금을 진행할 것입니다.

### ② 법제도개선활동

- 주요목표 : 21대 국회에 발의된 두 가지 법안 '노란봉투법'(노조법개정안)과 '괴롭힘소송방지법'(민사특례법안)을 주력 법안으로 상정하고,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노동현장간담회, 모의법정, 국가손배대응모임 등 기존 진행해온 법제도개선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 이행 방안 :

• 법제도개선위원회 : 현재 손배가압류 관련해 21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은 두 개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괴롭힘소송금지법'(국가 등의 괴롭힘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입니다. 이 두 개의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논의를 거쳐 입법될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위원회를 주축으로 해 국회를 상대로 입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모의법정 : 모의법정은 자원마련을 위해 공동주최와 사업비 확보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보고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노동현장간담회 : 노동현장이 지치지 않고 손배가압류에 맞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중심으로 노동현장간담회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노동현장이 손잡고의 법제도개선활동, 캠페인활동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현장과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 국가손배대응모임 : 쌍용차, 세월호를 비롯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손배가압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적극 소취하를 위한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 ③ 지원활동

- 주요 목표 :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시 논의.
- 이행 방안 : 성심수녀회와 같이 손잡고를 통해 피해가구에 직접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적극 발굴하고, 협업을 제안해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시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긴급모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의제활동

- 주요 목표 : 총선대응 및 21대 국회구성 이후 손배가압류 문제를 의제화함
- 이행 방안 : 손배가압류를 알리는 기고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손배가압류 문제를 주제로 기획 프로그램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 언론활동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 ⑤ 감시활동

- 주요 목표 : 손배가압류 관련 소송기록 아카이브 및 현황기록
- 이행 방안
  - ‘손배가압류 알리미’ 아카이브 : 올해는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아 ‘손배가압류 알리미’ 아카이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조파괴 수단으로 실행된 손배가압류로 인해, 손배가압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당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관련 기록조차 보관되지 않는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또한 손배가압류에 대한 정보 접근성(소송기록, 긴 재판과정에 대한 대응방안, 피해현황 등)이 떨어져 여론화하기 더욱 어렵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손잡고는 누구나 손배가압류와 관련한 소송기록(소장, 답변서, 판결문)과 피해현실에 대한 구술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손배가압류와 관련한 기록 아카이브 사업(온라인 아카이브)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1월을 기점으로 온라인 아카이브에 대한 시연회를 갖고자 합니다.

#### ⑥ 캠페인활동

- 주요 목표 :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여론화
- 이행 방안 :
  - 영상콘텐츠 ‘3분판례’, ‘나의사건검색’ :
  - ‘3분판례’는 마치 암호같은 손배가압류 판결문을 쉽게 소개하는 영상콘텐츠임

니다. 1차로 전문가 의견서를 받은 내용을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들이 다시 쉽게 풀어 3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나의사건검색-현장이야기’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소송과정, 그리고 소송 전후 상황을 소송 당사자인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영상콘텐츠입니다.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기상천외한 ‘소장’ 속 기록들, 그리고 실제 사건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장의 목소리로 되짚어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노동권을 어떤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여과없이 전달하고자 만든 콘텐츠입니다.

두 콘텐츠 모두 손잡고 공식 유튜브 계정(@sonjabgo)과 페이스북(@sonjabgo)에서 3월 말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⑦ 회원활동

- 회원총회 : 회원총회는 정관이 규정한 3월 이내 개최를 목표로 합니다.
- 뉴스레터 <손깍지> : 정기 뉴스레터 <손깍지>를 분기별로 발행하여 손잡고 활동 내용을 회원과 충실하게 공유하겠습니다.
- 회원사업 외에도 손잡고에서 2020년 추진한 공개사업(토론회, 발표회 등)에 회원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조직하겠습니다.

## 2 2021 예산(안)

1) 전년도 이월자산 : 28,235,533원

2) 2021년 예산(안)

수입예산				지출예산			
항목	세부항목	금액	내역	항목	세부항목	2021년(안)	2020년
이월		<b>28,235,533</b>			인건비(단기포함)	30,000,000	
후원	회비	50,400,000	* 회원 420명기준	운영비	인건비 외 운영비	15,000,000	42,893,092
					<b>소계</b>	<b>45,000,000</b>	
	후원	5,000,000	전년기준	사업비	법제도개선	25,000,000	32,431,401
	기타	2,000,000	전년기준 기타수익 등 추정		모금활동	3,000,000	
<b>소계</b>	<b>57,400,000</b>		의제활동		2,000,000		
사업	사업수익	100,000,000	공모 등		감시활동	50,000,000	
기금	<b>소계</b>	<b>100,000,000</b>			연대활동	3,000,000	
					회원활동	1,000,000	
				캠페인활동	50,000,000		
				지원활동	3,000,000		
				회의비	1,000,000		
				기타활동비	1,000,000		
				<b>소계</b>	<b>139,000,000</b>		
				예비비		<b>1,635,533</b>	
<b>수입총계</b>		<b>185,635,533</b>		<b>지출총계</b>		<b>185,635,533</b>	

### 안건3. 기탁 안건

[첨부자료1. 손잡고 정관]

## 손잡고 정관

개정 2016. 4. 25.

개정 2019. 4. 25.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약칭 “손잡고”)'라 한다.

#### 제2조 [목적]

손잡고는 노동쟁의 등을 원인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손배 가압류’라 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자 피해구제와 관련 법제도의 개선, 시민모금과 사회 여론형성 등 노동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와 다양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구성]

손잡고는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유로운 개인과 단체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 제4조 [사업]

① 손잡고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손배 가압류와 업무방해죄 관련 법제도 개선 사업
2. 손배 가압류 관련 모금
3. 손배 가압류 관련 피해자 지원 사업
4. 손배 가압류 관련 사회 의제화 사업
5. 노동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제고
6. 기타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손잡고는 제2조의 목적과 위 ①항의 사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 제5조 [소재]

손잡고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 제2장 회원

### 제6조 [회원]

- ① 손잡고의 목적에 동의하여 제안자(발기인)로 참여하거나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나 단체는 회원이 된다.
- ② 회원 가입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총회를 통하여 손잡고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2. 손잡고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

###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손잡고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후원금 또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9조 [자격 상실, 탈퇴]

- ①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손잡고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3장 기관

### 제1절 총회

#### 제10조 [지위]

총회는 손잡고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

#### 제11조 [구성]

총회는 대표와 운영위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2조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대표가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 방법은 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명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총회는 출석한 운영위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참석 회원들의 의결로써 의장을 선출한다.

####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 ① 총회는 손잡고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대표와 감사, 운영위원의 선출 및 해임
  - 3.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 4. 손잡고의 해산
  - 5. 기타
-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의 2 [임원의 해임] 대표, 감사,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1. 손잡고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손잡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2절 운영위원회

#### 제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손잡고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관이다.

제15조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대표와 5인 이상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③ 대표가 운영위원장이 되며, 공동대표를 두는 경우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으로 1인을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 ④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며, 운영위원장의 결위 또는 사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운영위원회 내에 활동위원회,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⑥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임기]

- ①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월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3.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절 활동위원회

#### 제20조 [지위]

- ① 손잡고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 활동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기구이다.
- ② 각 활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각 활동위원회는 손잡고의 목적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 ④ 활동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활동보고와 계획을 제출한다.

#### 제21조 [구성]

- ① 활동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활동위원회는 기금관리위원회, 소통위원회, 법제도개선위원회 등 손잡고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 제22조 [임기]

활동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절 대표, 감사, 사무국 등

#### 제23조 [대표]

- ① 대표는 손잡고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2인 이상의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 ③ 공동대표는 각자 손잡고를 대표한다. 대표가 결위 또는 유고시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대표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설>

#### 제23조의 2 [감사]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의 3 [사무국]

- ① 손잡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종사자를 포함한 구성원과 조직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 ② 사무국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4조 [자문위원]

손잡고는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사와 단체를 자문위원으로 두어 손잡고의 활동에 대한 협력과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25조 [지역조직 등]

- ① 손잡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조직 또는 회원모임을 둘 수 있다.
- ② 지역조직 또는 회원모임의 조직과 구성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 [부설기관]

손잡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27조 [회계 연도]

손잡고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예산과 결산]

- ①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 ② 대표는 손잡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29조 [수입]

손잡고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 제5장 해산

### 제30조 [해산 사유]

손잡고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 제31조 [해산 절차]

-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32조 [잔여 재산의 귀속]

손잡고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손잡고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 제6장 보칙

### 제33조 [준용 규정]

-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부칙[2016. 4. 25. 개정]

1. 이 정관 중 개정조항은 2016. 4. 25. 총회에서의 의결이 있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부칙[2019. 4. 25. 개정]

1. 이 정관 중 개정조항은 2019. 4. 25. 총회에서의 의결이 있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자료2. 21대국회 발의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18
----------	------

발의연월일 : 2021. 3. 4.

발 의 자 : 임종성·김정호·안규백

박상혁·안호영·양원영

윤후덕·최종윤·이규민

정춘숙·서영석·노웅래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아울러, 노조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안 제2조제5호).

나.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 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항 신설).

다.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제4항 신설).

라.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조합원

수·조합비·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마.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근로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다)·그 밖의 대우 등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

할 수 없다.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 ①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쟁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

2. 사용자의 영업 규모,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
4. 배상 의무자의 재정 상태
5.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3條(損害賠償 請求의 제한) 使用者는 이 法에 의한 團體交渉 또는 爭議行爲로 인하여 損害를 입은 경우에 勞動組合 또는 勤勞者에 대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lt;단서 신설&gt;</p> <p style="margin-top: 20px;">&lt;신 설&gt;</p> <p style="margin-top: 20px;">&lt;신 설&gt;</p>	<p>제3조(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① -----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p> <p style="margin-top: 20px;">----. 다만,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margin-top: 20px;">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라도 그것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margin-top: 20px;">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p>

<신 설>

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쟁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
2. 사용자 영업의 규모, 시장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의무
4.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5.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첨부자료3. 21대국회 발의 ‘괴롭힘소송금지법’]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989
----------	------

발의연월일 : 2020. 12. 29.

발 의 자 : 박주민.김승원.박홍근

이용빈.양정숙.박영순

이수진(비).윤미향.장경태

이형석.송영길.김남국

의원(12인)

제안이유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약칭 ‘SLAPP’)은 통상 시민의 공적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정부, 단체 및 개인)가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함. 이는 재판청구권을 남용하여 시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목적과 효과를 가져오는 소송으로서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그 제한을 위한 입법, 사법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주요내용

가. 기존의 ‘전략적 봉쇄소송’ 개념을 우리 현실에 맞게 ‘괴롭힘소송’으로 정의하고 보호대상을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

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구체화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괴롭힘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를 위한 별도의 심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다. 괴롭힘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별도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본안청구 외에 가압류신청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가압류절차의 특칙을 두어 가압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6조).

마. 괴롭힘소송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부담에 관한 특칙을 두어 괴롭힘소송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7조).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축시키는 괴롭힘소송의 제기를 금지하고 이를 통하여 공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괴롭힘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괴롭힘소송”이란 공적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관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행사한 개인, 노동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를 피고로 하여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에 실제적인 목적이 있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2. “공적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관하여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행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공기관에 의한 공적 절차에서 행하여진 진술 또는 제출된

서면

나. 공공기관에 의한 공적 절차에서 심리, 심의, 검토되는 사안에 관하여 행하여진 진술 또는 서면

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

라. 공적 중요성을 갖는 사안에 관하여 행하여진 진술, 서면 또는 집회에서의 진술, 행위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괴롭힘소송에 대한 각하신청 및 재판) ① 법원은 제기된 소송이 괴롭힘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괴롭힘소송을 제기한 자가 승소가능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송의 주된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보복 또는 괴롭히기로 인정되거나 소제기로 인한 기본권행사의 현저한 위축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의 각하 여부에 관한 재판은 별도의 심문기일을 정하여 심문을 진행한 후 신속하게 결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1

47조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까지 증거조사를 포함한 본안의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4조(즉시항고) 제3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또는 각하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반소) ① 피고는 원고의 소송이 괴롭힘소송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반소에 대한 판결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각하판결과 함께 선고되어야 한다.

제6조(가압류에 대한 특칙) ① 법원은 가압류신청에 기재된 당사자 및 피보전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및 기관의 장이 개인, 노동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가 행한 제2조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채권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

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채권

3. 그 밖에 제2조제1호에 따른 괴롭힘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건

② 채무자는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 전까지 가압류신청이 괴롭힘  
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재판은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7조(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에 관한 특칙) 법원은 제3조, 제5조,  
또는 제6조의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피고가 지급하  
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소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손잡고  마음 따뜻하다!  
노란봉투

---

**손잡고 자료집**

**손잡고 제6차 회원총회 자료집**

발행일 2021. 03. 22.

발행처 손잡고(대표 : 배춘환)

담 당 윤지선 활동가 02-725-4777 sonjabgo47@gmail.com

Copyright ©손잡고, 2021

대표전화 02-725-4777

홈페이지 [www.sonjabgo.org](http://www.sonjabgo.org)

---